

정 관

사단법인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당 법인의 설립 목적은 대한민국 무궁화 미술 공모전을 통해 시각 미술의 증흥과 공익 활동 증진 및 시각예술을 통해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제세이화 홍익인간 정신을 세계 인류에게 널리 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 공모사업
2. 나라꽃 무궁화 조성을 위한 간행물 발간사업
3. 나라꽃 무궁화 그림 순회전시
4. 무궁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사업
5. 미술체험 학습관 운영사업
6. 기타 무궁화미술대전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7. 태극 무궁화 문화 예술대전 및 체험 박람회 개최
8. 시각예술적인 무궁화길·무궁화동산 조성사업
9. 전국 지자체 무궁화 동산 건립 조성 및 조형물 사업등
10. 나라꽃 무궁화 선양연구회 조성사업



②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는 수입을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공익사업)에 사용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①회원은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 하여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회원은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회원이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①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1인
2. 부이사장2인
3. 이사(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6인
4. 감사1인
5. 회장, 명예회장 및 후원회장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선임)

- ①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②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회장, 명예회장 및 후원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이사장은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를 대표하고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 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의원총회)

- ①회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②대의원 정수는 이사장 및 이사, 지부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이사장, 이사,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 ③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태극 무궁화 선양회의 대의원 분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포, 기여도, 가입년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대의원 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⑤대의원의 임기는 제13조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총회 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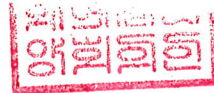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 ②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구분)

- ①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기본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관리)

- ①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기본 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 ①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 및 협찬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 ②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가 후원 단체, 기업 및 개인등 으로부터 기부받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①항 사목 3호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영의회의

제30조(회계년도)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채무부담)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사무처

제35조(사무처)

-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사무처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해산)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개정, 2022.1.18.)

제38조(정관개정)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회단체에 관한 규정과 그 소속 관청의 소관 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4.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3. 2 . 24 .

사단법인 태극무궁화예술선양회

